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부모 등 보호자 지원 시책 근거 마련 〉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85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부모 등 보호자 지원 시책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준혁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9. 30.
3. 회 부 일 : 2025. 10.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등의 권리와 책임을 지닌 교육당사자임.

이처럼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이 필수적임. 그러나 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부모 등 보호자 지원 시책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관련 시책의 수립·실시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보호자 교육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¹⁾ 제1장 총칙, 제2장 교육당사자, 제3장 교육의 진흥 등 총 3장으로 구성됨.

보호자는 제2장 교육당사자 중 제13조(보호자)에 규정된 교육 주체로, 해당 조항에는 보호자와 관련하여 ‘(제1항)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 (제2항)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제3항)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권리와 책임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관련 시책의 수립·실시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1) 「교육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보호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므로,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실시 의무를 제3장 교육의 진흥에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면서, 시책의 내용으로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해당 내용은 현행법 제13조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데, 개정안의 취지가 현행법 제13조의 내용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13조를 인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과 개정안의 보호자 관련 내용]

현행법	개정안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제30조(보호자 교육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또한 개정안은 조 제목을 ‘보호자 교육 등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이 위치한 제3장 교육의 진흥에 규정된 다른 조항의 제목에서 ‘지원’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²⁾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함. - 다만 「교육기본법」은 제3장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서 교육 전반에 적용되어야 하는 양성평등, 학습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7조의5부터는 생명존중, 안전사고, 통일 등 특정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 전반에 필요한 보호자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을 안 제30조에서 제17조의4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법제처 검토의견 관련).
○ 충청남도교육청: 일부수정 -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책의 목표·내용, 국가·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법제처: 일부수정 - 「교육기본법」 제3장 제17조의5부터 제29조까지는 특정 교육 분야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17조의2, 제17조의3은 교육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양성평등의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실시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제17조의3과 제17조의5 사이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89

2) 「교육기본법」 ‘제3장 교육의 진흥’에 포함된 조항 예시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학술문화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